

「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7월 17일

국토교통부 장관

「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기준」 일부개정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장수명 주택 인증을 위한 내구성 평가항목은 관련 표준시방서와 설계 기준을 차용하여 등급 기준을 구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에서 규정한 내구성 관련기준은 지속 강화되었으나 동 고시의 내구성 평가항목은 2018년 8월 이후 현행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발생하는 상호 불일치를 해소하고, 장수명 주택 인증이 서류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공 단계에서만 평가가 가능한 일부 평가항목을 삭제하는 등 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

가. 내구성 평가항목 내 성능등급 기준 현행화(안 별표1, 1) 내구성 ②
평가기준)

- 1) 철근 피복두께 및 콘크리트 설계기준 강도 최저기준(4급)을 표준시방서와 일치시키고 품질(강도·두께)에 따라 등급을 차등화
- 2) 콘크리트 설계강도를 염해위험지역에 따라 기준을 차등화하고, 혼선을 유발하는 피복두께 산정 문안은 삭제 후 성능등급표에 반영
- 3) 설계 단계에서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(슬럼프, 단위결합재량, 물결합재비, 공기량, 염화물량)을 삭제

나. 내구성 평가등급 기준 명확화 (안 별표1, 1) 내구성 ① 평가등급)

- 1) 기존 내용연수를 가지고 구분하던 등급기준을 필수조건과 콘크리트 품질강화 등 내구성 평가항목을 가지고 구분토록 개선

다. 최우수·우수등급 기준 완화(안 별표3)

- 1) 최우수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90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, 우수등급 점수기준을 현행 80점 이상에서 70점 이상으로 완화함

2. 의견제출

이 「장수명 주택 건설·인증기준」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. 8. 7일 까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 등

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
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정보마당 → 법령정보 → 행정예고를 참
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의견과 이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
다. 보내실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, 우편

번호 30103)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

(전화 044-201-3367, 팩스 : 044-201-5684, 국토

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정보

마당/법령정보/행정예고)